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한 직장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달리하면 별도노조 설립도 가능할지 여부

A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가 속한 사업장내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조를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32-3)

Q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부여 여부

A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또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써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서 개별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나 임금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 점만으로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그 규정상의 결근자 등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범위는 교환적 부분에만 국한되므로 보상적 부분인 정근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3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전세기간만료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실행방법】

Q 甲은 乙에게 금 3,000만원을 대어 하면서 乙이 丙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A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

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 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그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1995. 9. 18. 95마684, 1999. 9. 17. 98다31301)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거나,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지급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입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법적 절차도 없이 丙이 직접적으로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甲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丙이 乙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甲은 丙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바깥스물 미리미리 피임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깥스물에 가장 바쁜 병원이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휴양지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놀다보면 들뜬 마음으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해 출산이 수 43만 여건이고 임신중절수술은 34만 여건으로 약 79% 정도의 생명이 지워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10%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유산을 하게 되면

애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많이 상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유산 후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피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구성된 피임연구회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먹는 피임약은 여성의 배란 및 생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97%이르는 높은 피임효과를 나타내며 피임 효과를 원하는 경우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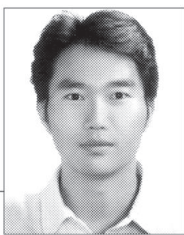
스스로 임신을 조절하기를 원하거나 섹스 시 방해가 되지 않는 피임법을 원하는 여성에게 적합한 방법이며, 남성도 피임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콘돔으로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 방지를 위한 효과가 높기 때문에 나타내지만 실제로 실패율이 15%에 이르므로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흔히 자연주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잘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배란기를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고, 자연주기법을 사용하다 계산을 잘못해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질 내 삽입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번거롭다는 점 때문에 콘돔 착용보다 더 불편하며, 자칫 분위기 때문에 피임을 생략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명한 피임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안과과장 하효신



눈병

우리 포천시 지역도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눈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집단적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나 눈병이 발병된 학생들이 장난으로 친구들의 눈을 만져서 전염된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폴로 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70(Enterovirus)과 코사키에바이러스(Coxsackievirus A-24)에 의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결막하출혈을 일으키므로 이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초기 자각증상은 충혈, 눈물 증가, 이물감, 눈부심, 눈꺼풀 부종, 분비물 증가 등의 증상이 한쪽에서 나타나서

대개는 양쪽 눈에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몸살을 앓는 것처럼 열, 귀앓, 림프선 종창, 기침 등의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 없이 2~3주내에 완치가 됩니다. 따라서 전파방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환자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나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으며 환자와의 직접 접촉 또는 환자가 쓰던 물건을 만진 후 눈을 만지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손 깨끗이 하기, 안약을 돌려쓰지 않기, 수건 따로 쓰기 등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지킨다면 급성과 같은 눈병의 대량 발생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 031-539-9246)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정전시 대처요령

- 우리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
- 육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 휴즈의 이상 유무를 확인
- 육내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 육내설비에 이상이 없을때에는 한전(123)에 연락 하십시오
• 이웃과 같이 정전이 되었을 경우
- 대부분 선로고장인 경우이며 이때는 즉시 작업 복구에 임하게 되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 여러고객이 동시에 전화를 하게되면 통화체증이 발생하게 되어 통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로고장에 의한 정전은 대부분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순간정전 대비요령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지연석방형 전자개폐기를 부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석방형 전자개폐기는 선로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1~5초 동안 부하회로 차단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 순간정전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불시정전 대비사항
-전력설비는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닐하우스(특용작물재배) 양어장, 양어장, 농수축산물 저장용 정전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지연이나 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Q 시가 6억 원인 토지를 3억원에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매매당사자간에 가족 등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A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정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

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 따라 달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시가

와 실거래 대가와외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시가와 매매가격과의 차액이 3억 원으로 공제되는 3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매당사자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외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시가 6억원의 금액 1억 8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1억 8천만원을 공제한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때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하였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경 포천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이중효 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

Advertisement for Hyeok Joong-gongsa (흥조경공사) featuring a landscape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yeok Joong-gongsa,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a representative photo.